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8,527,769	17,355,833
일반회계	567,692,481	17,030,774
특별회계	10,835,288	325,059
기타특별회계	10,835,288	325,059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28,161	6,845
건축진흥특별회계	201,625	6,049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42,697	22,281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69,066	38,072
삼계도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330	970
드림빌특별회계	3,250,053	97,50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30,044	6,901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90,116	2,703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6,306	13,0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54,890	130,6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7,18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